농(임)업인 실익상품(2종) 상 품 해 설

목 차

- I. 개정 배경
- Ⅱ. 상품내용
 - 1. 농(임)업인NH안전보험(무배당)
 - 2.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(무배당)

상 품 개 발 부 (상품개발팀)

□ 특약 신설을 통한 보장 강화

○ 교통재해사망특약의 개발로 농작업 이외의 교통사고를 보장하여 농(임)업인 의 보장을 강화하려함

□ 장애여부 사전고지 폐지에 따른 장애인형 명칭 변경(일반5형 신설)

○ 보험업감독업무 시행 세칙 개정내용 中 장애인에 대한 사전고지 폐지 이행 으로 장애인형의 명칭을 일반 5형으로 변경하도록 함

□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최소가입나이 축소

○ 농업계고등학교 학생 현장실습 및 방학 아르바이트, 대학생 농활등 저연령 층의 농작업 일손돕기등 참여가 많아진 바, 최소가입나이를 축소하여 가입 을 확대하도록 함

(현행) **20세** ~ 87세 → (개정후) **만 15세** ~ 87세

1. 농(임)업인NH안전보험(무배당)

□ 상품의 구성

| | 종목명 | 농(임)업인NH안전보험(무배당) | | | | |
|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|
| | 기본형 | 일반형 | 개인형/부부형 | 1형, 2형, 3형, 4형,5형 | | |
| 주계약 | । । । । । । । । । । । । । । । । । । । | 산재형 | 개인형/부부형 | 1형, 2형 | | |
| | 상해 • 질병치료급여금 | 일반형 | 개인형/부부형 | 1형, 2형, 3형, 4형,5형 | | |
| | 부(不)담보형 | 산재형 | 개인형/부부형 | 1형, 2형 | | |
| 종속 | 장제비지원특약(무배당) | 개인형/부부형 | | | | |
| 특약 | 재해사망특약(무배당) | 개인형/부부형 | | | | |
| 독립 특약 | 교통재해사망특약(무배당) | · 통재해사망특약(무배당) 개인형/부부형 | | | | |

□ 가입형태

| 보험기간/납입기간 | 납입주기 | 가입대상 | 최고 가입한도 |
|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|
| 1년 | 연납 | 농·임업인 | - 주계약 : 1,000만원(단일) - 장제비지원특약(무) : 100만원,·300만원 - 재해사망특약(무) : 1,000만원(단일) - 교통재해사망특약(무) : 1,000만원(단일) |

□ 가입나이

| | | 가입나이 | | |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| | | 게시처 | 1형·2형 | 만 15세 ~ 87세 |
| | 기본형 / | 일반형 | 개인형 | 3형 · 4형 · 5형 | 만 15세 ~ 84세 |
| 주계약 | 상해・질병 | - 불만영 | 부부형 | 1형·2형 | 만 15세 ~ 87세 |
| | 치료급여금 부(不)담보형 | | | 3형 · 4형 · 5형 | 만 15세 ~ 84세 |
| | | 산재형 | 개인형 부부형 | 1형·2형 | 만 15세 ~ 84세 |
| 종속 | | | | | |
| 특약 | | 만 15세 ~ 87세 | | | |
| 독립 특약 | | 교통재하 | | | |

□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

○ 농기계종합보험 동시가입자 또는 기가입자는 농(임)업인NH안전보험(무) 주계약 보험료(특약보험료 제외)의 5%를 할인(부부형 제외)

□ 보장내용

○ 주계약 : 기본형 / 상해·질병치료급여금부(不)담보형

| 급 부 명 | 일반형 | | | | | 산재형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н т ₃ | 1형 | 2형 | 3형 | 4형 | 5형 | 1형 | 2형 |
| 유족급여금 | 5,500만 | 7,500만 | 9,000만 | 1.2억 | 7,500만 | 1.2억 | 1.2억 |
| 장례비 | | 100만 | | | | 1,000만 | 1,000만 |
| 고도장해급여금 | 5,000만 | 7,500만 | 9,000만 | 1억 | 7,500만 | 1억 | 1.2억 |
| ~ 재해장해 급여금 | 5,000만 × 장해 율 | 7,500만 × 장해 율 | 9,000만 ×장해 율 | 1억 × 장해 율 | - | 1억 ×장해율 | 1.2억 × 장해율 |
| 간병급여금 | | 500만 | | | | 3,000만 | 5,000만 |
| 휴업(입원)급여금 (3일초과 1일당) | 21 | 만 | 3만 | | 2만 | 4만 | 6만 |

| 급 부 명 | | 일반형 | | | | | 산재형 |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
| | | 1형 | 2형 | 3형 | 4형 | 5형 | 1형 | 2형 | |
| 재활급여금 (고도장해) | | | | 500만 | | | 1,000만 | 3,000만 | |
| 재활급여금 (재해장해) | | | 500만 × | 〈 장해율 | | - | 1,000만 × 장해율 | 3,000만 × 장해율 | |
| | 특정감염병진단급여 금(진단1회당) | | 30만 | | | | | 30만 | |
| | 수술급여금 l회당) | 30만 | | | | 30만 | | | |
| | | 치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서 자기부담금 제외한 금액 보장 | | | | | | 금액 보장 | |
| | 기본형 | (농작업 중 질병 또는 상해 입원비 최대 한도) | | | | | | | |
| 상해 • 질병 | | (각각 1천만원) | | | | | (각각 5 | 천만원) | |
| 치료 급여금 | 상해·질병 치료급여금 부(자) 담보형 | | | | - | | | | |

주) 지급사유 세부사항은 별첨자료 참조

○ 선택특약:개인형/부부형

(단위 : 원)

| 특약명 | 지급사유 | 지급금액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장제비지원특약(무) | 보험기간 중 사망시 | 100만 / 300만 |
| 재해사망특약(무) | 보험기간 중 재해로 사망시 | 1,000만 |
| 교통재해사망특약(무) |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시 | 1,000만 |

주) 장제비지원특약(무)는 농업인만 가입가능

□ 보험료

○ 주계약

- 일반형

(단위 : 원)

| | 구분 | | 1형 | 2형 | 3형 | 4형 | 5형 |
|--------|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| 기본형 | 보험료 | 96,000 | 112,200 | 127,500 | 145,100 | 97,600 |
| 개 | 기관영 | 정부지원액 | 48,000 | 56,100 | 63,750 | 72,550 | 48,800 |
| 인 형 | 상해·질병 | 보험료 | 51,800 | 68,000 | 83,400 | 101,000 | 53,400 |
| Ü | 이 치료비 부(不) 담보형 | 정부지원액 | 25,900 | 34,000 | 41,700 | 50,500 | 26,700 |
| | 기본형 | 보험료 | 192,000 | 224,400 | 255,000 | 290,200 | 195,200 |
| 부 | 기근영 | 정부지원액 | 96,000 | 112,200 | 127,500 | 145,100 | 97,600 |
| | 부 청해·질병 치료비급여금 부 (不)담보형 | 보험료 | 103,600 | 136,000 | 166,800 | 202,000 | 106,800 |
| | | 정부지원액 | 51,800 | 68,000 | 83,400 | 101,000 | 53,400 |

- 산재형

(단위 : 원)

| 구분 | | | 1형 | 2형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| 기본형 | 보험료 | 159,600 | 180,700 |
| 개 | 기본영 | 정부지원액 | 79,800 | 90,350 |
| 인 형 | 인 상해・질병 | 보험료 | 114,700 | 135,700 |
| ° 치료비급여금 부(不)담보형 | | 정부지원액 | 57,350 | 67,850 |
| | _1 \ \ =1 | 보험료 | 319,200 | 361,400 |
| 부 | 기본형 | 정부지원액 | 159,600 | 180,700 |
| 형 기 | 상해·질병 치료비급여금 | 보험료 | 229,400 | 271,400 |
| | 부(不)담보형 | 정부지원액 | 114,700 | 135,700 |

주) 상기 정부지원액은 보험료의 50%를 정부에서 지원 가정시 금액/ 농경영체 미등록자 및 정부가 지원하지 않은 대상으로 지정될 시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○ 선택특약

(단위 : 원)

| 그범 | 기이그에 | 보험료 | | |
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|
| 구분 | 가입금액 | 개인형 | 부부형 | |
| 기계계기이트하(묘) | 100만원 | 11,500 | 23,000 | |
| 장제비지원특약(무) | 300만원 | 34,500 | 69,000 | |
| 재해사망특약(무) | 1,000만원 | 9,900 | 19,800 | |
| 교통재해사망특약(무) | 1,000만원 | 4,500 | 9,000 | |

주) 선택특약은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.

□ 예정이율 : 3%

2.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(무배당)

□ 상품의 구성

| 종목명 | 농작업근로자NH안전보험(무배당)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세 목 | 기본형 | | |
| 계 덕 | 상해·질병치료급여금부(不)담보형 | | |

□ 가입형태

| 보험기간 | 납입방법 | 가입나이 | 최고 가입한도 | 보험계약 관계자 |
|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|
| 1일 ~ 89일 | 일시납 | <u>만15세</u> ~87세 | 1,000만원 (단일) | - 계약자 : 농업인 - 피보험자 : 계약자가 농업작업을 위해 고용한 단기 피고용인 |

□ 보장내용

○ 주계약 : 일반형(기본형/상해·질병치료급여금부(不)담보형)

(가입금액 1,000만원 / 단위 : 원)

| 급보 | 쿠명 | 지급사유 | 지급금액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|--|
| 유족급 | 급여금 |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시 | 1,000만 | |
| 장리 | 月月 |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시 | 100만 | |
| 고도장하 | 해급여금 |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80%이상 장해시(최초 1회한) | 1,000단 | |
| 재해장하 | 해급여금 | 농업작업안전재해로 3%이상 80%미만 장해시 | 1,000만×장해율 | |
| 간병급여금 | | 농업작업안전재해로 50%이상 또는 농업작업 안 전질병으로 80%이상 장해시(각각 최초 1회한) | 500만 | |
| 휴업(입원)급여금 | |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4일이상 입원시 (1회 입원당 120일 한도) | 입원일수 3일초과 1일당 2만 | |
| 재활(고도장해) 급여금 | |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질병으로 80%이상 장해시(최초 1회한) | 500만 | |
| 재활(재해정 | }해)급여금 | 농업작업안전재해로 3%이상 80%미만 장해시 | 500만×장해율 | |
| 특정질병4 | 수술급여금 | 특정질병으로 수술시 | 수술 1회당 30만 | |
| 특정감염병 | 진단급여금 | 특정감염병으로 진단시 | 진단 1회당 30만 | |
| | 기보청 | 치료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서 자기부담금 | 제외한 금액 보장 | |
| 상해 · 질병 | 기본형 | 농작업 중 질병 또는 상해 입원비 최대 1천만원 한도 | | |
| 치료급여금 | 상해 · 질병 치료급여금 부(不) 담보형 | _ | | |

주) 「유족급여금」 및 「장례비」의 경우 '유해생물방제제(농약)의 독성효과(T60)'은 농업 작업안전질병에서 제외됩니다.

□ 보험료

○ 주계약

(단위 : 원)

| 보험기간(일) | 기본 | - 형 | 상해·질병치료급여금 부(不)담보형 | |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|
| | 보험료 | 정부지원액 | 보험료 | 정부지원액 | |
| 1~2 | 3,100 | 1,550 | 900 | 450 | |
| 3 | 3,900 | 1,950 | 1,200 | 600 | |
| 4~5 | 6,200 | 3,100 | 1,900 | 950 | |
| 6~7 | 7,700 | 3,850 | 2,400 | 1,200 | |
| 8~10 | 8,500 | 4,250 | 2,600 | 1,300 | |
| 11~14 | 10,000 | 5,000 | 3,100 | 1,550 | |
| 15~17 | 10,800 | 5,400 | 3,300 | 1,650 | |
| 18~21 | 12,300 | 6,150 | 3,800 | 1,900 | |
| 22~24 | 13,100 | 6,550 | 4,000 | 2,000 | |
| 25~27 | 14,600 | 7,300 | 4,500 | 2,250 | |
| 28~30 | 15,400 | 7,700 | 4,700 | 2,350 | |
| 31~45 | 18,500 | 9,250 | 5,600 | 2,800 | |
| 46~60 | 23,100 | 11,550 | 7,100 | 3,550 | |
| 61~89 | 30,800 | 15,400 | 9,400 | 4,700 | |

주) 상기 정부지원액은 보험료의 50%를 정부에서 지원 가정시 금액/ 농경영체 미등록자 및 정부가 지원하지 않은 대상으로 지정될 시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□ 예정이율 : 3%

[별첨1] <u>농(임)업인NH안전보험(무) 지급사유 세부사항</u>

| 급 부 | 지 급 사 유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--|
| 유족 급여금 |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(다만,농업작업안전질병 중 '유해생물방제제(농약)의 독성효과(T60)'제외) | | | |
| 장례비 |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사망하였을 때(다만,농업작업안전질병 중 '유해생물방제제(농약)의 독성효과(T60)'제외) | | | |
| 고도장해 급여금 |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%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(최초 1회 한) | | | |
| 재해장해 급여금 |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 지급률 중 3%이상 80% 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| | | |
| 간병 급여금 |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%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%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(각각 최초 1회 한) | | | |
| 휴업(입원) 급여금 |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(1회 입원당 120일 한도) | | | |
| 재활 (고도장해) 급여금 |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동일한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동일한 농업작업안전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상의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%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(최초 1회 한) | | | |
| 재활 (재해장해) 급여금 |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 지급률 중 3%이상 80% 미만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| | | |
|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|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질병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| | | |
|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|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 | | | |
| 상해 • 질병 치료급여금 |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농업작업안전재해 또는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| | | |

[별첨2] 주계약 급부 中 「상해·질병치료급여금」에 관한 세부사항

○ 보장내용

| 종목 | | 지 급 사 유 | 7) 7. 7 AU | | 보장한도 | |
|----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| | | | 지급금액 | 산재형 이외 | 산재형 |
| 질병 | 입원 | <u>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</u> <u>인하여</u>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| 입원실료, 입원제비용, 수술비 | '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'과 '비급여(상급병실료 차액제외)'를 합한 금액(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)의 80%에 해당하는 금액 ※ 다만, 나머지 20%가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보상 | 하나의 하나의 질병당 질병당 1,000만원 5,000만원 | |
| | | | 상급병실료 차액 |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분병실의 병실료 차액에서 50%를 뺀 금액(단,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) | | |
| | 통원 | 농업작업안전질병으로 외래 인하여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| 외래 | 방문 1회당 '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'과 '비급여'를 합한 금액(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)에서 약관상의 '항목별 공제금액'을 차감한 금액 ※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| 방문1. 20만원 | |
| | | | 처방조제비 | 처방 1건당 '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'과 '비급여'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)에서 약관상의 '항목별 공제금액'을 차감한 금액 ※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| 처방전 10만원 | |
| 상해 | 입원 | 입원실료, <u>농업작업안전재해로</u> 입원제비용, 입원하여 수술비 | 질병입원과 상동 | 하나의 질병당 | 하나의 질병당 | |
| | | 치료를 받은 경우 | 받은 경우 상급병실료 차액 | 질병입원과 상동 | 1,000만원 한도 | 5,000만원 한도 |
| | 통원 | <u>농업작업안전재해로</u> 통원하여 | 외래 | 질병통원과 상동 | 방문1 20만원 | |
| | |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| 처방조제비 | 질병통원과 상동 | 처방전 10만원 | |

○ 항목별 공제금액 (통원에 해당하는 사항)

| | 종목 | 공제금액 | | |
|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|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원,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, 보건지료소 | '1만원'과 '보상대상의료비의 20%'중 큰 금액 | | |
| 외래 |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 | '1만5천원'과 '보상대상의료비의 20%'중 큰 금액 | | |
| | 종합전문요양기관, 상급종합병원 | '2만원'과 '보상대상의료비의 20%'중 큰 금액 | | |
| 처방 조제비 | 약국,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, 조제(의사의 처방전 1건당,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) | '8천원'과 '보상대상의료비의 20%'중 큰 금액 | | |

○ 다수보험의 처리

- 상해·질병치료급여금의 경우 실손의료보험(우체국보험, 각종 공제, 상해·질병·간병보험 등 제3보험, 개인연금·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·공제계약을 포함)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된 경우, <u>각 계약의 보상대</u> 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비례분담하여 지급합니다.

[비례분담액 예시]

●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=

(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-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) ×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을 합한 금액